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차 해 영 의원)

의 안 번 호	25-156
------------------	--------

발의년월일: 2025. 11. .

발의자: 차해영, 권인순, 김승수, 오옥자,
장영준, 장정희, 최은하

1. 개정이유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기술·문화적 변화 및 ‘사회적 가족’ 확산에 따라 사회적 도시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구체화·확대하고, 1인가구 정책 자문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셜다이닝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 나. 1인가구 지원 사업 구체화 및 확대(안 제7조)
-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반영(안 제8조)
- 라. 사무 위탁의 법적 근거 명확히 규정(안 제9조)
- 마.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15조)

3. 관계법령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5조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5. 11. 7. ~ 11. 12.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셜 다이닝(Social-Dining)”이란 1인가구가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으로, “문화·여가 생활”을 “문화·여가·체육 생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범죄예방, 생활안전,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2. 질병·외로움 예방, 돌봄 등 건강 지원사업
3. 소셜 다이닝, 먹거리 제공 등 식생활 지원사업
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6. 주거정착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사업
7. 맞춤형 일자리, 경제적 안정 등 자립 지원사업
8.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9.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10.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11.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
한 사업

제8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지원사업의 위탁 및 운영

4. 지원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1인가구 지원 관련 업무 소관 국장·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1인가구 지원 관련 분야 국장·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1인가구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1인가구 지원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소셜 다이닝(Social-Dining)</u>”이란 1인가구가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활동을 말한다.</p>
<p>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u>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u></p> <p>2. <u>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u></p> <p><u><신 설></u></p> <p>3. <u>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u></p> <p><u><신 설></u></p>	<p>제7조(지원 사업) ① -----.</p> <p>1. 범죄예방, 생활안전,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p> <p>2. 질병·외로움 예방, 돌봄 등 건강 지원사업</p> <p>3. 소셜 다이닝, 먹거리 제공 등 식생활 지원사업</p> <p>4. 프로그램 -----</p> <p>-- 문화·여가·체육 생활 --</p> <p>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p>

	<u>교류 활성화 지원사업</u>
<u><신 설></u>	<u>6. 주거정착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사업</u>
<u><신 설></u>	<u>7. 맞춤형 일자리, 경제적 안정 등 자립 지원사업</u>
<u><신 설></u>	<u>8.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u>
<u><신 설></u>	<u>9.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u>
<u><신 설></u>	<u>10.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u>
	<u><삭 제></u>
<u>4.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u>11.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u>
<u><신 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 시설 설치 · 운영) ① · ② (생략)	제8조(지원 시설 설치 ·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③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설치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9조(사무의 위탁) (생략)

<신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 가족센터 -----

-----.

제9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지원사업의 위탁 및 운영
4. 지원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1인가구 지원 관련 업무 소관 국장·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1인가구 지원 관련 분야 국장

·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1인가구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
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
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1인가구 지원 관련 업무 담

<p><u><신 설></u></p>	<p><u>당 팀장이 된다.</u></p> <p><u>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u></p> <p><u>제1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u></p>
---------------------------	--

【관 계 법 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

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가족정책과 박완정
연락처	02-3153-8933